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내부통제 강화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법」 제21434호 '26.3.10 개정, '26.9.11 시행

2. 주요내용

가. 조합 내부통제기준 강화 및 준법감시인 도입(안 제4조의8, 제4조의9)

- 지역 농·축협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는 사항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정함

나. 외부회계감사 대상 조합 확대 기준 마련(안 제8조의2제1항)

-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매 1년마다, 5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은 매 2년마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주기 단축

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안 제8조의2제2항~제15항)

-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이 4년 회계감사 시, 이후 2년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수감하게 하고,
 - 감사인 지정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 등

라. 중앙회 내부통제 강화(안 제11조의6)

-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 점검 후, 그 결과를 전무이사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고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 및 제4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44조의2제2항(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농업·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농업·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난 사람

2.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것. 다만, 같은 항 제10호와 제12호는 준법감시인이 조합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조합이 수행하는 신용사업,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3.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관한 업무

제4조의9(조합 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을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
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조합장 임기 개
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
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를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으로 한
다.

제8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수감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8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16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 농협 : 2년

2.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 농협 : 1년

②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농협”이란 지정 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③ 법 제65조의2제4항(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 이상이 된 지역농협 : 해당 자산총액 이상이 된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2.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 미만이 된 지역농협 : 자산 총액의 감소로 직전 회계연도 자산총액이 제2항의 기준 자산총액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부터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없이 제9항(제1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지정감사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4. 그 밖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제8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자 등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감사인은 지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15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지정회계감사 대상 지역농협 및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회계감사 대상 조합 등과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역농협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라 지정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지역농협은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조합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 단서에 따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새로 지정된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⑫ 제10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일”은 “통지일”로 본다.

⑬ 제9항(제1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지정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5항(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인 지정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지정절차, 그 밖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회계감사의 방법, 감독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5의 제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을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으로 한다.

제11조의6의 제목 “(내부통제기준)”을 “(중앙회 내부통제기준)”으로 한다.

제11조의6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회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전무이사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제2항(중전의 제1항)제3호 중 “업무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

5조의4제4항”을 “법 제125조의4제6항”으로 한다.

가. 임직원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배분·평가 등에 관한 사항

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1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제8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조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수감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수감 주기 및 감사 수감은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령에 따라 2026 회계연도에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를 수감한 지역농협 중 2026 회계연도의 자산 규모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2028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8(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① 법 제44조의2제2항 (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u> <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u> <u>가.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나. 농업·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u>		

현행	개정안
	<u>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라. 농업·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난 사람</u> <u>2.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u> <u>3.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것. 다만, 같은 항 제10호와 제</u>

현행	개정안
<신 설>	<u>12호는 준법감시인이 조합원인 경우에 한정한다.</u> <u>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 <u>③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u> <u>2. 조합이 수행하는 신용사업,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u> <u>3.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관한 업무</u> <u>제4조의9(조합 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u>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u> <u>3.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u> 가. 임직원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u>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u> <u>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u> <u>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 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후단 신설>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 ----- ----- ----- ----- -----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 ----- ----- ----- ----- --.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수감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1.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 농협 : 2년
<u><신 설></u>	2.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 농협 : 1년
<u><신 설></u>	②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u><신 설></u>	③ 법 제65조의2제4항(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 이상이 된 지역농협 : 해당 자산총액 이상이 된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

현행	개정안
<신 설>	<u>사를 받은 후 그 다음 연속하</u> <u>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농</u> <u>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u> <u>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u> <u>록 할 수 있다.</u> 2. <u>자산총액이 감소하여 제2항</u> <u>에 따른 자산총액 미만이 된</u> <u>지역농협 : 자산 총액의 감소</u> <u>로 직전 회계연도 자산총액이</u> <u>제2항의 기준 자산총액보다</u> <u>낮아지게 된 경우, 해당 회계</u> <u>연도부터 법 제65조의2제3항</u> <u>(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12</u> <u>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u> <u>포함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u> <u>다.</u>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u> <u>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u> <u>법률」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u> <u>신청을 받아 법 제65조의2제3항</u> <u>(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12</u> <u>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u> <u>포함한다)에 따른 감사인(이하</u> <u>“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u> <u>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정감</u>

현행	개정안
<신설>	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없이 제9항(제1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지정감사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4. 그 밖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제8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자 등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감사인은 지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15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지정회계감사 대상 지역농협 및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u> <u>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회계감사 대상 조합 등과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u> <u>⑧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역농협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을 제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라 지정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지역농협은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조합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신 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 단서에 따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새로 지정된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u> ⑫ <u>제10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일”은 “통지일”로 본다.</u>
<신 설>	⑬ <u>제9항(제1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지정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신 설>	⑭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5항(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인 지정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u>
<신 설>	⑮ <u>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u>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 건 등) ①·② (생략)	<u>규정한 사항 외에 주기적 감사 인 지정의 지정절차, 그 밖에 감 사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회계감사의 방법, 감독 등 그밖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11조의6(내부통제기준) <신 설>	제11조의5(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중앙회 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중앙회 감사위원회 는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기 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전무이사 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①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 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② 법 제125조의4제6항----- ----- ----- ----- 1.·2. (현행과 같음)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

현행	개정안
사항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4. ~ 8. (생략) ② (생략) 제5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⑤ (생략) ⑥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u>제7호</u>까지, 제11호 및 제12호는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5. (생략) <u><신 설></u>	-- <u>가. 임직원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u> <u>나.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배분·평가 등에 관한 사항</u> <u>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u> <u>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u> 4.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제8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 ----- -----. 1. ~ 5. (현행과 같음) 6. <u>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조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u>

현행	개정안
<u>6.</u> ~ <u>12.</u> (생략)	<u>관한 사무</u> <u>7.</u> ~ <u>13.</u> (현행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